

청각 장애인에 대한 인정 어학성적 적용 방법

□ (적용대상)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」에 따른 장애인 중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- ① '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(기존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
- ② '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사람

□ (인정 어학성적)

구 분		점수구성	인정 어학성적 점수
영 어	TOEIC	Listening 50% + Reading 50%	Reading 점수 × 2
	NEW TEPS	Listening 40% + Vocabulary 10% + Grammar 10% + Reading 40%	(Vocabulary 점수 + Grammar 점수 + Reading 점수) × 1.67
중 국 어	新 HSK	Listening 33.3% + Reading 33.3% + Writing 33.3%	(Reading 점수 + Writing 점수) × 1.5
일 본 어	JPT	Listening 50% + Reading 50%	Reading 점수 × 2
프랑스어	FLEX (듣기·읽기)	듣기 40% + 읽기 60%	읽기 점수 × 1.67
스페인어	FLEX (듣기·읽기)	듣기 40% + 읽기 60%	읽기 점수 × 1.67

* 제출 원점수와 듣기(Listening)를 제외한 인정 어학성적 점수 중 유리한 점수 적용

□ (신청 방법) 입사 지원 시 청각장애 인정 어학점수 적용 대상임을 ☒ (체크)하고, 아래 두 가지 서류를 기한 내 모두 제출 시 인정

*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舊2·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‘② 의사진단서’ 제출 불필요

① 장애인증명서 : 지원서 접수기간 내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

* (유효서류) 우대사항 증빙 제출서류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, 정부24에서 '26. 8. 26.(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90일 전) 이후 인터넷 발급한 서류만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 인정

② 의사진단서*(이비인후과 전문의 발급) 원본 : 면접 당일 제출

* 의사 소견서 불인정

▶(유효서류)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▶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▶(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- 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⇨ 예시표 표시 내용 ①

- (나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⇨ 예시표 표시 내용 ②

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라 검사

- 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⇨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,

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으로서

③ 한국수자원공사 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